



정 선 군

군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군 보

<http://www.jeongseon.go.kr/>

제651호 2024. 1. 17. (수)

【고 시】

- 정선군 고시 제2024-1호 정선 군관리계획(시설 :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1
- 정선군 고시 제2024-2호 2024년 입산통제 및 등산로 폐쇄구역 지정 · 고시.....3
- 정선군 고시 제2024-3호 조동7.8리 새뜰마을(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 시행계획 변경 고시.....5
- 정선군 고시 제2024-4호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 공표.....8
- 정선군 고시 제2024-5호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 및 서명인수 공표.....9
- 정선군 고시 제2024-6호 주민조례청구 연서대상 주민총수 공표.....11

【공 고】

- 정선군 공고 제2024-18호 2024년도 정선군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계획 공고
.....12
- 정선군 공고 제2024-21호 정선(정선) 군계획시설사업(자동차정류장) 공사 완료 공고
.....22
- 정선군 공고 제2024-38호 세대주명단 작성비용 공시.....23
- 정선군 공고 제2024-51호 2024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 공고.....24
- 정선군의회 공고 제2024-1호 정선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31
- 정선군의회 공고 제2024-2호 정선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입법예고.....53
- 정선군의회 공고 제2024-5호 정선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입법예고.....66
- 정선군의회 공고 제2024-6호 정선군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73
- 정선군의회 공고 제2024-7호 정선군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81

□ 발행 : 정선군청 기획관 (전화:560-2213, FAX:560-2592)

고 시

정선군 고시 제2024-1호

정선 군관리계획(시설 :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정선 군관리계획(시설 :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강원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에 따라 변경 결정하고,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강원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월 5일

정 선 군 수

가. 결정(변경) 취지 : 삼탄 정암광업소 수질정화시설 운영과 관련, 현 시설용량을 초과 유입되는 갯내수를 처리하고자 수질오염방지시설 증설을 위한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

나. 위 치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3-1번지 일원

다. 정선 군관리계획(시설 :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

1) 환경기초시설 결정(변경) 조서

가)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①	삼탄수질 정화시설	수질오염 방지시설	고한읍 고한리 3-1번지 일원	19,703	증)1,230	20,933	정선군 고시 제2010-96호 (2010.7.9.)	

나)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①	삼탄수질 정화시설	면적 : 면적 변경(증 1,230㎡) 19,703㎡ → 20,933㎡	현 정화시설 처리량(16,000㎡/일)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갯내수의 처리를 위한 정화시설 용량 증설에 따른 구역면적 확장

라. 정선 군관리계획(시설 :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지도 : 게
재생략

마.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s://www.eum.go.kr>)에서도
열람이 가능함

정선군 고시 제2024-2호

2024년 입산통제 및 등산로 폐쇄구역 지정 · 고시

「산림보호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과 산림보호법 제3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6항에 의거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 등을 위한 입산통제(등산로 폐쇄)구역 및 화기물 소지 입산금지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2024년 1월 4일

정 선 군 수

1. 입산통제기간

- 봄 철 : 2024. 02. 01 ~ 2024. 05. 15.
- 가을철 : 2024. 11. 01 ~ 2024. 12. 15.

※ 산불조심 기간 중 산림에 화기 및 인화물질소지 입산을 금지합니다.

2. 통제구역 지정목적 : 산불예방, 산림보호

3.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 폐쇄 지정내역 : “붙임” 참조

가. 입산통제구역 : 정선군 정선읍 덕우리 20번지 외 8,376필 12,768ha

나. 등 산 로 : 46개구간 150.2km(개방 49.8km, 폐쇄 100.4km)

4. 기타사항

가.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려는 자는 「산림보호법」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입산허가증을 교부받은 후 입산하여야 하며, 허가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자는 「산림보호법」 제57조제5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나.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꽂초를 버린 자 및 화기, 인화물질, 발화물질을 지니고 산에 들어간 자는 「산림보호법」 제57조제4항제1호 및 같은 법 제57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다.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자는 「산림보호법」 제57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라. 다만 『산림보호법』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 규정에 의거

입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통제 구역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1) 조림, 숲가꾸기, 사방, 벌채, 임도시설 등 산림사업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 2) 산불예방, 병해충방제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 3) 군 및 예비군의 작전업무수행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 4) 학술연구·자원조사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 5)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된 산림에 거주하는 주민이 일상 생업상의 목적으로 입산하는 경우
 - 6) 성묘 및 분묘설치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 7)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39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위원이 산림보호활동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 8)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라 설정된 수렵장 내의 정당한 수렵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 9) 송·배전 선로의 점검 및 유지·보수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 10) 문화재(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조사, 연구, 보존·관리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 마. 입산통제 기간이 지나면 자동 해제되므로 입산신고를 하지 않고 입산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정선군청 산림과(033-560-2157)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정선군 고시 제2024-3호

조동7.8리 새뜰마을(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 시행계획 변경 고시

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수준 보장을 위해 안전, 위생 등 긴요한 생활 인프라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 주민역량 강화 등 지원을 위하여 추진중인 『조동7.8리 새뜰마을(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59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시행계획을 변경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월 5일

정 선 군 수

1. 사업의 명칭 : 조동7.8리 새뜰마을(농어촌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

2. 사업의 배경 및 목적

- 안전·위생 등 긴급한 생활인프라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 휴먼케어 활동 및 주민역량 강화 지원을 통해 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수준 보장

3. 사업비 : 2,514,271천원

- 국비 (1,774,000천원), 지방비 (661,000천원), 자부담 (79,271천원)

4. 주요사업내용 (※ 시행계획 변경내용 별첨)

- 위 치 : 정선군 신동읍 조동7.8리 안경다리마을 일원
- 기반시설정비
 - 배수로정비, 안전확보, 문화복지공간 조성, 조동7리 경로당 지붕개선, 커뮤니티센터 조성
- 주택정비
 - 빈집정비, 슬레이트 지붕개량, 집수리
- 마을환경개선
 - 안길정비, 샘터정비, 재래식 공동화장실 정비, 노후담장 정비
- 역량강화
 - 휴먼케어, 주민역량강화

5. 사업시행자 : 정선군수(위탁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6. 사업기간 : 2019년 ~ 2023년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선군 도시과 (☎ 033-560-24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 시행계획 변경내용

(단위 : 백만원)

구 분	이전 계획		금회 계획		증감 내역		증감 사유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총 계		2,514 <79>		2,514 <79>		-	
◇ 기반시설정비		1,005		1,005		-	
- 배수로정비	48m	80	48m	80	-	-	
- 안전확보	1식	440	1식	440	-	-	
- 문화복지공간조성	1식	406	1식	406	-	-	
- 조동7리 경로당 지붕개선	104㎡	59	104㎡	59	-	-	
- 커뮤니티센터 조성	1식	20	1식	20	-	-	
◇ 주택정비		595		378		△217	
- 주택철거	15호	121	16호	122	1호	1	사업량 증가
- 슬레이트지붕개량	18호	168 <46>	18호	147 <46>	-2호	△21 <->	사업량 감소
- 주택수리	32호	306 <33>	26호	109 <33>	-6호	△197 <->	사업량 감소
◇ 마을환경개선		344		495		151	
- 안길정비	1식	200	1식	316	1식	116	사업량 증가
- 마을샘터정비	1식	20	1식	20	-	-	
- 재래식 공동화장실 정비	3개소	59	3개소	59	-	-	
- 노후담장정비	55m	65	107m	100	52m	35	
◇ 역량강화		66		46	-	△20	
- 휴먼케어	1식	36	1식	16	1식	△20	
- 지역역량강화	1식	30	1식	30	-	-	백서포함
◇ 제경비		504		590	-	86	
- 기본계획비	1식	30	1식	30	-	-	
- 세부설계비	1식	49	1식	49	-	-	
- 공사감리비	1식	178	1식	178	-	-	
- 사업관리비	1식	30	1식	30	-	-	
- 석면조사비	1식	14	1식	14	-	-	
- 안전진단	1식	42	1식	42	-	-	
- 잡지출	1식	161	1식	247	1식	86	

정선군 고시 제2024-4호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 공표

「주민투표법」 제5조 및 제9조, 「정선군 주민투표조례」 제5조 및 제16조 규정에 의거
2024년도 정선군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를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

2024년 1월 10일

정 선 군 수

(단위 : 명)

18세 이상 주민수(A)			선거권 없는자(B)	청구권자 총수 (A-B)	비 고
계	주 민 등 록	조 례 외국인			
31,521	31,485	36	40	31,481	-

☞ 주민투표 청구 서명 주민 수 : 3,149명 이상

※ 청구권자 총수의 1/10이상 서명

정선군 고시 제2024-5호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 및 서명인수 공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2024년도 정선군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 및 서명인수를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

2024년 1월 10일

정 선 군 수

□ 주민소환투표 주민청구권자 총수

(단위 : 명)

시군명	19세이상 주민수(A)			선거권이 없는 자(B)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A-B)	비 고
	계	주민 등록	3년경과등 록 외국인			
정선군	31,279	31,243	36	40	31,239	-

※ 2023. 12. 31. 기준

□ 주민소환투표 청구 서명인수

○ 정선군수

(단위 : 명)

선거구명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총수	서명인수	비 고
정선군수	31,239	4,690	총 서명인수
정 선 읍	8,653	1,298	읍면 최소 서명인수
고 한 읍	4,148	623	"
사 북 읍	3,843	577	"
신 동 읍	3,005	451	"
화 암 면	1,451	218	"
남 면	2,864	430	"
여 량 면	1,807	272	"
북 평 면	2,275	342	"
임 계 면	3,193	479	"

○ 정선군의회 의원

(단위 : 명)

선거구명	읍면명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총수	서명인수	비 고
가 선거구	소 계	17,379	3,478	총 서명인수
	정선읍	8,653	1,731	읍면 최소 서명인수
	화암면	1,451	291	"
	여량면	1,807	362	"
	북평면	2,275	455	"
	임계면	3,193	639	"
나 선거구	소 계	13,860	2,773	총 서명인수
	고한읍	4,148	830	읍면 최소 서명인수
	사북읍	3,843	769	"
	신동읍	3,005	601	"
	남 면	2,864	573	"

정선군 고시 제2024-6호

주민조례청구 연서대상 주민총수 공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정선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2024년도 정선군 주민조례청구 연서대상 주민총수를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

2024년 1월 10일

정 선 군 수

(단위 : 명)

18세 이상 주민수(A)			선거권이 없는자(B)	연서대상 주민총수 (A-B)	비 고
계	주민등록	3년경과 등록외국인			
31,521	31,485	36	40	31,481	-

☞ 청구할 수 있는 연서 주민의 수 : 1,575명 이상

※ 연서대상 주민 총수의 1/20이상

공 고

정선군 공고 제2024-18호

2024년도 정선군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계획 공고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2024년도 정선군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8일

정 선 군 수

1. 명예퇴직수당 개요

가. 지급대상

- 명예퇴직 : 정선군 소속 공무원 중 「공무원연금법」 제25조(재직기간의 계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자로서 정년퇴직일 전 1년 이상의 기간 중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력직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은 제외)

나. 명예퇴직 제외대상

- 감사원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징계처분이 요구되어 있는 자,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이 요구되어 있는 자 또는 징계처분으로 인한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
-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감사원 등 감사기관과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에 관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자
-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경력직공무원(임기제공무원 제외)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정무직공무원(선거에 의하여 임용되는 정무직공무원 제외)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자
- 지방자치단체 기능의 이관에 따라 그 이관되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의 소속 직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자
- ※ 명예퇴직수당지급 신청일 이후부터 명예퇴직일까지의 기간 중에 상기 사유가 발생되면 그 지급대상에서 제외함

다. 지급인원 : 예산의 범위 내

2. 신청 및 처리절차

가. 신청기간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제3조 관련)

명예퇴직수당 신청기간	명예퇴직 예정일
1. 1. ~ 1. 15.	2. 28.
3. 1. ~ 3. 15.	4. 30.
5. 1. ~ 5. 15.	6. 30.
7. 1. ~ 7. 15.	8. 31.
9. 1. ~ 9. 15.	10. 31.
11. 1. ~ 11. 15.	12. 31.

비고 : 1. 2월의 말일이 29일인 경우에는 명예퇴직예정일을 2월 29일로 한다.

2. 해당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와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자필로 작성하여 명예퇴직수당 신청기간 내에 군수에게 제출한다.

- 퇴직 후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된 공무원이 퇴직하거나 직제와 정원의 개폐, 부득이한 사유(취업, 질병 등)로 퇴직하는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 20일 이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시 명예퇴직 가능
 - ※ 1월, 3월, 5월, 7월, 9월, 11월

나. 신청절차

- 명예(조기)퇴직 신청희망자는 신청기간 내에 아래 서식을 자필로 작성하시고 부서장을 경유하여 군수(인사담당 부서장)에게 제출
 - ① 지방공무원 명예(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 ② 명예(조기)퇴직원
 - ③ 퇴직자 보안 서약서 ④ 수당지급을 위한 통장사본 1부

다. 심사 및 결정

- 연금법상의 재직기간 및 명예퇴직수당지급 제외사유를 확인한 후 인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 결정
- 대상자 결정 시 상위직공무원, 장기근속공무원을 우선적으로 고려함

라. 대상자 통지

-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즉시 그 결과를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통지

마. 명예퇴직자 예우

- 명예퇴직
 - 1계급 특별승진 : 명예퇴직 당시 당해 계급에서 1년 이상 재직자만 해당
 - 퇴직자 포상 : 정년퇴직자의 포상과 같음
 - 명예퇴직 수당 지급 : 퇴직과 동시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늦어도 퇴직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 완료

바. 명예퇴직 수당지급

- 지 급 일 : 명예퇴직일 이후 30일 이내 지급
- 지 급 액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별표 1)

잔여기간	봉급	관리업무수당	산 정 기 준
1년이상 5년이내	호봉제	-	(기본급×68%×1/2)×정년잔여월수
	연봉제	○	(연봉월액×78%×68.54%×1/2)×정년잔여월수
		X	(연봉월액×84%×67.5%×1/2)×정년잔여월수
5년초과 10년이내	호봉제	-	(기본급×68%×1/2)×{60+(정년잔여월수-60)×1/2}
	연봉제	○	(연봉월액×78%×68.54%×1/2)×{60+(정년잔여월수-60)×1/2}
		X	(연봉월액×84%×67.5%×1/2)×{60+(정년잔여월수-60)×1/2}
10년초과	정년 잔여기간이 10년인 사람의 금액과 동일		

※ 연봉월액 : 성과연봉 제외

※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4조에 따라 장애등급에 따른 가산 지급

3. 유의사항

가. 각 부서의 장은 자필로 명예(조기)퇴직원을 작성토록 하되,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명예퇴직대상자로 신청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하고 또한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이거나 비위조사 중인자 등과 같이 명예퇴직의 취지에 비추어 문제의 소지가 있는 자가 신청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나.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자가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함

※ 명예퇴직수당 환수 대상자

-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 재직 중에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 재직 중에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 경력직공무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 명예퇴직수당을 초과하여 받거나 그 밖에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급받은 경우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및 「정선군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거나 총무행정관(033-560-22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별표 1] <개정 2019. 12. 24.>

명예퇴직수당 지급액 산정표(제4조 관련)

정년잔여기간별 대상자	산 정 기 준
1. 1년 이상 5년 이내인 사람	퇴직 당시(「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제1항제4호에 따라 특별승진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특별승진직전을 말한다. 이하 같다) 월봉급액의 반액×정년잔여월수
2. 5년 초과 10년 이내인 사람	퇴직 당시 월봉급액의 반액× $\left[60 + \frac{\text{정년잔여월수}-60}{2}\right]$
3. 10년 초과인 사람	정년잔여기간이 10년인 사람에 대한 산정금액과 동일한 금액(10년을 초과하는 정년잔여기간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비고

- 명예퇴직수당 지급액의 계산 시 정년잔여기간은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의 퇴직일의 다음 달 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 정년잔여기간은 명예퇴직일 현재 「지방공무원법」 상의 정년을 기준으로 한다.
- 월봉급액 산정기준은 대통령령 제22619호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부칙(대통령령 제23498호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및 대통령령 제26887호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하며, 이하 이 표에서 "부칙"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적용하되, 이 영 제4조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가산지급액 및 제10조에 따른 조기퇴직수당 산정 시에도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 제24917호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 단서에 따라 같은 영 시행 당시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되 매년도 공무원 처우개선을 반영한 금액을 포함한 봉급을 지급받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퇴직 당시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적용한다.
 - 부칙 제5조제1항에 따라 호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월봉급액은 봉급표상의 봉급액의 68퍼센트를 적용한다.
 - 부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월봉급액은 연봉월액(성과연봉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의 78퍼센트[「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2에 따른 관리업무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5급(상당) 공무원은 84퍼센트]의 68.54퍼센트[「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2에 해당하지 않는 5급(상당) 공무원은 67.5퍼센트]를 적용한다.

[붙임 제1호서식] <개정 2015.10.05.>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7조·제8조에 따름
------	-----	--

신청인 기재란	① 소속	③ 공무원 구분 [] 일반직 [] 특정직()	④ 직급·계급·직무군 (호봉)
	② 전(前) 소속 (특수경력직공무원과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 공무원이 임기제공무원으로 신분 단절 없이 임용된 경우만 작성)		
	⑤ 성명 한글 한자	⑥ 생년월일	⑦ 주소 □□□-□□□
	⑧ 전화번호(지택)	⑨ 근속기간 년 월	⑩ 정년일
⑪ 비위·형벌 사항 [] 있음 [] 없음		[] 비위조사 중 [] 수사진행 중 [] 형사재판 계류 중 [] 「지방공무원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수사 결과가 통보되어 징계의 결 요구 필요 [] 징계처분 요구 중 [] 징계의결 요구 중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 [] 형(罰) 확정(확정일:) 형량:) []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규정된 범죄 관련 형의 선고유예 (선고일:) 선고형:) []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직무 관련) 형 확정 (확정일:) 형량:) []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직무 관련) 형의 선고유예 (선고일:) 선고형:)	

소속 기관 기재란	⑫ 정년 구분 [] 연령정년 [] 계급정년	⑬ 정년 세(년)		
	⑭ 경력직 퇴직 또는 임기제 경과기간 후 특수경력직 퇴직 시 임용 후 퇴직 시까지의 [] 임기제 [] 별정직 년 월	확인	인사담당관 (인)	
	⑮ 정년잔여기간 (수당지급대상기간) 년 개월 (년 개월)	⑯ 수당청구액 및 산출내용		
	⑰ 비위·형벌 사항 확인 [] 있음 [] 없음	[] 비위조사 중 [] 수사진행 중 [] 형사재판 계류 중 [] 「지방공무원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수사 결과가 통보되어 징계의 결 요구 필요 [] 징계처분 요구 중 [] 징계의결 요구 중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 [] 형(罰) 확정(확정일:) 형량:) []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규정된 범죄 관련 형의 선고유예 (선고일:) 선고형:) []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직무 관련) 형 확정 (확정일:) 형량:) []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직무 관련) 형의 선고유예 (선고일:) 선고형:)		
확인		인사담당관 (인)	연금담당관 (인)	감사담당관 (인)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6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신청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 첨부서류
1. 인사기록카드 사본 1부. 다만, 인사담당자가 전자적 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2. 명예퇴직원(「정선군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별지 제2호서식) 1부
 3. 경력증명서 1부(「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위의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소속기관의 장 직인

정선군수 귀하

- 비고: 1. 신청인 기재란은 신청인 본인이 자필로 적고, 소속기관 기재란은 해당 인사·연금·감사담당자가 적습니다.
 2.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면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받은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다만, 같은 항 제1호의2 및 제1호의3은 2010년 3월 22일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인한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신청인	→	접수 소속 기관	→	지급결정 및 통보 정 선 군	→	신청인 통지 소 속 기 관	→	지 급 정 선 군
---------------	---	-------------	---	--------------------	---	-------------------	---	--------------

(뒤쪽)

작성방법

1. ②란은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에는 경력직공무원 퇴직 당시의 소속기관을,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이 신분의 단절 없이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임기제공무원 임용 전의 소속기관을 적습니다.
2. ③란은 해당란([])에 "√"표시를 하고, 특정직공무원(소방·교육 공무원 등)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공무원의 종류를 ()에 적습니다.
*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에는 경력직공무원 퇴직 당시의,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이 신분의 단절 없이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일 당시의 공무원 종류를 적습니다.
3. ④란을 적을 때에는,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 또는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에서 신분 단절 없이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경력직공무원 퇴직 당시 또는 임기제공무원 임용 직전의 직급(계급)·직무군(전문경력관의 경우)·호봉을 적습니다.
4. ⑨란은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의 재직기간을 적되, 퇴직 예정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5. ⑪란은 신청인이 해당란에 "√"표시를 하고,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형 확정일과 형량을 적고,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선고일과 선고형을 적습니다.
6. ⑫ ~ ⑰란은 해당 기관의 인사담당관·연금담당관 및 감사담당관이 직접 적습니다(⑭란은 특수경력직 또는 임기제 근무기관의 인사담당관이 적습니다).
7. ⑫란은 해당란에 "√"표시를 합니다.
8. ⑬란은 연령정년 및 계급정년에 따라 해당 정년을 "세" 또는 "년"으로 적습니다.
9. ⑮란은 명예퇴직 예정일의 다음 달 1일부터 정년일까지의 기간을 월 단위로 계산하여 적습니다.
10. ⑰란은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의 기재사항을 직접 파악·확인할 수 있는 소속기관의 해당 공무원이 작성하되("√" 표시), 직급과 성명을 적고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습니다.

[붙임 제2호서식]

명 예 퇴 직 원

1. 소 속:

2. 직 위:

3. 직급·계급:

4. 성 명:

○ 명예퇴직 사유:

※ 명예퇴직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고, 재취업의 경우 대상기관, 직위, 시기(기간) 등을 명시합니다.

○ 명예퇴직 신청일:

○ 명예퇴직 희망일:

※ 명예퇴직 희망일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6조제2항에 따른 수시 명예퇴직 신청자만 적습니다.

위 본인은 자유의사에 따라 위와 같이 ([]정기·[]수시) 명예퇴직하려고 하니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정선군수 귀하

[붙임 제3호 서식]

명예퇴직자 확약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위 본인은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를 제출함에 있어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3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음과 같은 명예퇴직수당 지급제외 사유가 없음을 확약하며,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 제출이후 퇴직일까지 명예퇴직수당 지급제외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소속부서 및 총무행정관에 신고하겠습니다.

- 가. 징계의결이 요구되어 있지 아니함
- 나. 징계처분으로 인한 승진임용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함
- 다.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에 있지 아니함
- 라. 감사원 등 감사기관과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에 관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에 있지 아니함
- 마. 정무직공무원(선거에 의하여 임용되는 정무직은 제외)이 되기로 예정되어 있지 아니함
- 바. 퇴직 후 지방자치단체 기능의 이관에 따라 그 이관되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의 소속 직원이 되기로 예정되어 있지 아니함

년 월 일

명예퇴직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정선군수 귀하

[붙임 제4호 서식]

퇴직자 보안서약서

본인은 2024년 월 일부로 퇴직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정선군 근무 중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은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기밀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이적행위가 됨을 자각하여 퇴직 후에도 알게 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할 때에는 동기 여하를 막론하고 그 결과가 반국가적 행위임을 자인하고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2024년 월 일

서약자 : 소속	직	성명	(서명/인)
서약집행자 : 소속	직	성명	(서명/인)

정선군수 귀하

정선군 공고 제2024-21호

정선(정선) 군계획시설사업(자동차정류장) 공사 완료 공고

강원도 고시 제1985-134호(1985. 12. 14.)로 최초 결정되어, 강원도 고시 제2021-138호(2021. 4. 2.)로 변경 고시된 정선(정선) 군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에 대하여 승강장 증축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사 완료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12일

정 선 군 수

1. 위 치 : 정선군 정선읍 북설리 757-3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군계획시설사업(자동차정류장 승강장 증축)

나. 명 칭 : 정선(정선) 군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증축(승강장)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시설명	군계획결정		실시계획인가	비고
	세부시설명	연 장	금회 시행	
교통시설	자동차정류장 (여객자동차 터미널)	A=4,824㎡	☐ 자동차정류장 A=4,824㎡(구역면적) ☐ 금회시행 ■ 승강장 증축 A=81.60㎡	

4. 사업시행자 및 주소

가. 성 명 : 정선군수(교통관리사업소)

나. 주 소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정선읍 정선로 1226

5. 사업기간

가. 착수일 : 2023. 10. 4.

나. 준공일 : 2023. 12. 29.

정선군 공고 제2024-38호

세대주명단 작성비용 공시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3항, 제11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대주 명단의 작성비용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2024년 1월 10일

정 선 군 수

일반명단 작성비용	라벨용 명단 작성비용	전산자료 복사본 (USB)
A4 용지(매당) 60원/매	A4 라벨용지 200원/매	(10,000원×USB개수)

정선군 공고 제2024-51호

2024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 공고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14조에 따라 2024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이하 “기본직불금”) 등록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11일

정 선 군 수

1. 신청기간 및 방법 : 2024. 2. 1. ~ 4. 30.

※ 지자체 업무여건을 고려하여 온라인(인터넷, 스마트폰, ARS)을 활용한 비대면 간편 신청 및 읍면동 방문 신청 기간을 구분 운영

가. 비대면 : 2.1~2.29(1개월간), 대상자 개별 문자 발송 및 인터넷 신청

* ‘23년 기본직불 등록정보와 ’ 24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동이 없고 자격요건 사전검증 결과 적격한 농업인

나. 방문 : 3.4~4.30(2개월간),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비대면 미신청 농업인, 신규신청자, 관외경작자,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 및 농업법인 등

2. 신청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지에서 실경작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 중 다음의 지급요건을 충족한 자

가. 기본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 과거의 쌀직불·밭직불·조건불리직불금의 지급대상 농지요건*을 충족한 농지

* (쌀직불) ‘98~’ 00년도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밭직불) ‘12~’ 14년도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조건불리) ‘03~’ 05년도 조건불리지역에서 농업에 이용된 농지(초지는 제외)

○ 다만, 농지전용 허가·신고 등, 임대차계약 종료, 부정수급으로 등록제한 기간 중인 자가 소유한 농지, 농업에 이용하지 못하는 농지면적(폐경) 등은 지원에서 제외

나. 기본직불 지급대상 농업인 및 농업법인

- ‘16년 이후 직불금 수령자, 후계농업인·전업농업인 등 정책으로 선정된 자, 신규 신청자*, 승계대상자** 등

* 신규신청자의 경우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지급대상 농지 0.1ha(농업법인은 5ha) 이상에서 실제로 농업에 종사하였거나, 수확한 농산물 연간 판매금액이 120만원 이상인 농업인(농업법인은 4500만원)

** ’ 23년도 기본직불금을 수령하였으나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농업에 종사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①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서 ②사유 발생 직전 1년 이상 등록자와 주소를 같이하고 ③해당 농지를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①+②+③ 모두 충족)

- 다만,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요건 미충족, 농업외 종합소득 3700만원 이상,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 부정한 농지 분할 등이 확인된 경우 지급대상자에서 제외

3. 기본직불금 유형별 자격요건

가. 소농직불금

- 기본직불금 지급대상 농업인 및 농지의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 중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가

자격요건 항목	자격 기준
① 농가 내 모든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지급대상 농지의 면적 합	0.1ha 이상 ~ 0.5ha 이하
②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이 소유한 농지의 면적의 합	1.55ha 미만
③ 농가 내 모든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영농종사 기간	직전연도 기준 연속하여 3년 이상
④ 농가 내 모든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촌 거주 기간	직전연도 기준 연속하여 3년 이상
⑤ 농가 내 모든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업외종합소득금액	2,000만원 미만
⑥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의 농업외 종합소득금액의 합	4,500만원 미만
⑦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 농업인의 축산업소득금액의 합	5,600만원 미만
⑧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 농업인의 시설재배업 소득금액의 합	3,800만원 미만

* 농가구성원 : ① 주민등록표상 같이 거주하고 있는 세대원, ② 주민등록표에 없으나 가족관계증명서에서 (1) 배우자, (2) 미혼인 19세 미만의 자녀, (3) 혼인 외의 사유로 세대분리기간이 3년 이내인 자녀

** 지급대상 농지면적이 0.5ha를 초과하나, 면적직불금으로 산정시 130만원 미만인 경우 소농직불금을 선택하여 신청 가능

나. 면적직불금

- 기본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및 농업인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나 소농직불금 대상이 아닌 농업인 및 농업법인

4. 지급단가

가. 소농직불금 : 농가당 130만원

나. 면적직불금 : 기본직불 등록자의 지급대상 농지를 대상으로 농업진흥지역 논·밭,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및 밭을 구분하여 면적 구간별 역진적 단가를 적용

(단위 : 만원/ha)

구간 (면적) 유형	1구간	2구간	3구간
	(2ha 이하)	(2ha 초과 ~ 6ha 이하)	(6ha 초과)
농업진흥지역 논·밭	205	197	189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178	170	162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	134	117	100

- 현재의 지목과 관계없이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요건에 따른 단가 적용

* (논) '98~' 00년도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밭) '12~' 14년도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03~' 05년도 조건불리지역에서 농업에 이용된 농지(초지는 제외)

- 농업인은 30ha, 농업법인은 50ha, 들녘경영체 운영법인은 400ha까지 지급 상한

* 다만, 2019년에 종전의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 면적의 합이 면적 직접지불금 지급상한면적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경우 초과 면적까지 인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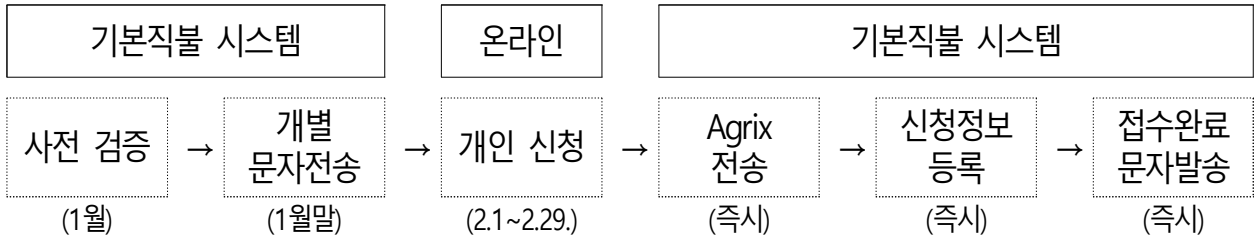
5. 신청방법

가. 사전안내

-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지·농업인을 기준으로 기본직불금 신청 전에 자격요건을 검증하고 지급 가능성이 있는 농업인에게 신청 안내

* 농업경영체 등록된 전화번호를 통해 대상 농업인에게 문자발송(2월), 방문접수 기간에 신청하지 아니한 농업인 대상 신청 안내 추가 발송(4월, 2회)

나. 비대면 간편 신청



○ 대상 : ‘23년 기본직불 등록정보와 ’ 24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동이 없고 자격요건 사전검증 결과 적격한 농업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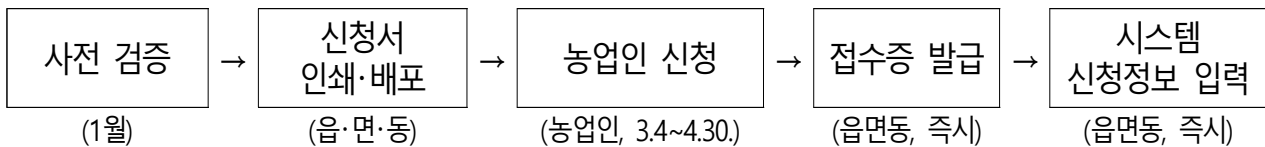
○ 신청기간 : ‘24. 2. 1. ~ 2. 29.

○ 신청방법 : 농식품부에서 대상 농업인에게 비대상 간편 신청 대상 안내 및 온라인 (인터넷, 모바일, ARS) 간편 신청

* 인터넷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① 이름·주민번호·핸드폰인증 → ② 개인정보 제공 동의 → ③ 지급대상 농업인 및 농지정보, 금액 확인 → ④ 신청 확인

○ 제출서류 : 없음

다. 방문 신청(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대상 : 비대면 미신청 농업인, 신규신청자, 농업법인 등

○ 신청기간 : ’ 24. 3. 4. ~ 4. 30.

○ 신청방법 : 기존수혜자는 관할 읍·면·동에서 기본직불 등록신청서를 인쇄·배포하나 신규신청자 등은 관할 읍·면·동에 방문하여 신청

* 관할 읍·면·동 : 농지면적이 가장 넓은 소재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등록신청서를 받은 농업인등은 안내문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되 ’ 23년 기본직불 지급받은 면적, 사전 안내문을 참고하여 폐경 면적*은 신청면적에 포함하지 않도록 주의

* 농지가 아닌 토지(산지, 초지 등), 불경지(미관리 및 방치 등), 묘지, 폐기물·모래·자갈적치, 골재채취장·양어장, 건축물부지·주차장, 정원(조경수, 관목수 등 식재), 공사장 등 농업에 이용되지 않은 면적

- 소농신청서를 받은 경우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농가 구성원을 모두 기재한 후 개별 서명을 받아 읍·면·동에 제출

* 서명이 불가능할 때 농가 구성원의 휴대폰 번호를 기재하여 제출. 향후 자동응답 시스템(ARS)을 통해 개인정보 제공 동의 등을 진행할 예정

1) 소농직접지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모든 농가 구성원의 정보를 아래와 같이 작성

- ① 주민등록표등본에 있는 가족 구성원은 ④-1에 기재
- ② 주민등록표등본에는 없으나(신청자와 같이 거주하지 않은 세대원 중) 가족관계증명서에 있는 1) 배우자, 2) 미혼인 19세 미만의 자녀, 3) 혼인 외의 사유로 세대분리 기간이 3년 이내인 세대원은 ④-2에 기재

④ 가족관계 인적정보 작성표(신청인 기준) ※ “소농”을 선택하실 경우만 해당

④-1 주민등록상 세대원(세대주 포함) ※ 주민등록표등본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관 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
		-

④-2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한 가족구성원 ※ 가족관계등록부를 기준으로 작성하며 ④-1에 기재하지 않은 구성원만 작성합니다.

		-
		-

2) 농지면적 등을 확인 후 신청할 면적을 기재하고, 소농직접지불금 선택

3) 축산업이나 시설재배업을 하는 경우 연간 소득 추정금액을 기재

4) 뒷부분 하단의 “행정정보 이용 및 정보제공 동의”에 농가 구성원의 자필 서명

*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대리 서명 가능

- 소농직불금 자격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면적직불금으로 신청

- 제출서류 : 필수대상서류는 제출이 원칙. 다만 행정정보공동이용이 가능한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토지대장 등은 생략 가능

구 분	제출서류
1. 등록신청서 필수	▶ 기본직불 등록신청서(* 행정정보 이용 및 정보제공 동의 서명)
2. 본인 소유가 아닌 농지(임차농업인)를 적법한 권원으로 점유 또는 사용한 농지를 증명하는 서류 필수	※ 임대차계약이 9.30일 이전에 종료하거나 기본직불 신청인과 농지의 임차인이 다른 경우 ▶ 임대차계약의 신규·갱신이 필요한 경우 읍·면·동을 통해 농지대장 현행화 요청 * 신청인과 대부계약서 당사자와 상이한 경우 ▽ 동일경영체에 속한 세대원, ▽ 농가 구성원이 농지를 분할한 것이 아닌 경우는 제외 ▶ 다만, 중중소유 농지(회의록에 실경작자에게 임대), 재산세 납부 증명(또는 재산세납부자와 임대차계약) + '무단점유가 아님을 증명하는 확인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 1년 단위로 인정(~'24년), '25년부터는 신청 및 지급 제외
3. 승계대상자	※ 승계대상자는 우선 농지대장 및 농업경영정보를 변경등록 ▶ 승계 사유 발생 직전 1년 이상 기본직불 등록자와 주소를 같이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사망자 및 본인의 주민등록초본) ▶ 직전(지급) 연도 기본직불 등록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4. 신규대상자, 관외경작자, 노인장기요양등급판정자 필수	▶ 농지소재지의 아·통장 및 마을 농업인 2인 이상(총 3인 이상)으로 발급받은 "경작사실확인서" ▶ 인삼재배농업인의 경우 「인삼산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인삼 협동조합장의 경작사실확인서를 받은 경우 해당 서류로 대체 * 아·통장은 경작사실확인서 발급대장을 읍면동에 제출(~5월)
5. 금년도 기본직불 등록자 신청농지의 면적합이 직전년도 신청면적합 보다 적은 경우	※ 거짓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농지를 분할하여 신청이 확인된 경우 등록거절 또는 부정수급 처리 ▶ 직전 연도 지급대상 농지의 매매계약 등 소유권 이전 증명자료 :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서 신고필증, 취득등록세 납부영수증 등 ▶ 직전 연도 지급대상 농지의 임대차 종료 : 시스템 확인, 임대차계약서 ▶ 농지전용 등으로 농지의 형상 및 기능이 종료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농지전용 관련 자료, 시스템 검증 ▶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 : 「농지법」에 따른 임대차계약 정보

- 제출방법 : 관련 서류를 사전에 준비하여 신청하는 농업인이 직접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지역 여건에 따라 이·통장 등을 통하여 대리 신청 가능
- 임대차계약서 등 신청 기간 내에 준비가 어려우면 기본직불 등록신청서를 우선 관할 읍·면·동에 제출하고 9.10일 이내 보완

6. 유의 사항

가. 기본직불 등록신청정보 변경등록

- 농업인이 신청한 기본직불 등록정보에 대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관할 읍·면·동에 9.10일까지 변경등록 가능
- 농지 분·합필 등으로 추가·제외 등 변경이 필요할 경우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에게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요청
- 농업인은 기본직불금 등록사항에 대한 검증결과 읍면동에서 추가 확인 또는 서류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적극 협조
 - * 자격요건이 부적격 또는 제출서류 미보완 등일 경우 관련 내용 안내 및 보완요청

나. 준수사항 및 부정수급 관련

- 기본직불금 등록자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부여된 준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함
 - * 준수사항 이행점검 결과 위반이 확인된 경우 기본직불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
- 기본직불 등록신청자는 실경작하는 농업인 등에게 지원하는 보조사업으로 허위서류 제출, 부정한 농지 분할 등에 대한 점검이 강화될 예정이며 적발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처벌*
 - * ① 허위 등록시 3년 또는 5년간 등록 제한, ② 허위로 신청하여 직불금 수령시 전액 환수하고 5배의 제재부가금을 부과 및 5년 또는 8년간 등록 제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공익직불제 통합콜센터(1334)에 문의하시거나, 농림사업정보시스템(www.agrix.go.kr)에서 사업시행지침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선군의회 공고 제2024-1호

정선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정선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리기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정선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1월 4일

정선군의회의회장

1. 개정이유

- 상위법인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2023. 8. 16. 공포, 2024. 2. 17. 시행) 일부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청구권자가 지방의회에 주민조례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와 홍보의 의무를 신설하였으며, 이의신청절차 종료 후 3개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한 기한내 수리·각하 결정을 하도록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규정을 정비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안 제1조)
- 청구 절차에 대한 홍보·교육 등 주민조례청구권 보장에 관한 사항 (안 제2조)
- 청구에 필요한 최소연서수 및 공표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 주민조례청구 대표자 증명서 발급 및 선정대표자 등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대표자의 청구인명부 서명요청 등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청구인명부의 공표와 열람, 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안 8조)
- 청구인명부의 보정 기간에 대해 규정 (안 제9조)
- 주민조례청구 수리·각하 결정 및 통지 기한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 대표자 변경 및 주민조례청구 철회 신청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
- 주민조례 입안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
- 군수의 사무협조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

3. 예고기간 : 2024. 1. 4. ~ 1. 9.(초일불산입 / 5일간)

4. 조 례 안 : 붙임 참조

5. 의견제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9일까지 정선군의회 의장(의회사무과)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우)26131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0,
정선군의회
- 전 화: 033-560-2507
- 팩 스: 033-563-0320
- 이 메 일: acesd07@korea.kr
- 홈페이지
 - 정선군의회 <https://council.jeongseon.go.kr>
 - 정선군 <http://www.jeongseon.go.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정선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연 락 처: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정선군의회 조례 제 호

정선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정선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정선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① 정선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청구권자(이하 “청구권자”라 한다)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에 대한 홍보·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③ 정선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청구된 모든 주민조례청구 및 제3조에 따른 연도별 청구에 필요한 최소연서수 및 청구권자 총수를 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그 내용 및 처리현황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3조(청구에 필요한 최소연서수 등)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표된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 청구권자 총수의 20분의 1 이상이 연대 서명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한 후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회에 알려야 한다.

제4조(주민조례청구서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주민조례청구 및 대표자 증명서의 발급 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동대표자를 적은 서면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의장이 발급하는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③ 의장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조례명, 청구의 취지 및 이유

3. 서명요청 기간

4. 정보시스템의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와 전자서명 방법 및 취소 방법

④ 대표자는 대표자증명서 발급 시 대표자 전원의 동의로 주민조례청구에 필요한 통지를 받을 3인 이내의 대표자(이하 “선정대표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고, 대표자가 여러 명인 경우 의장은 선정대표자의 선정을 대표자들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⑤ 의장은 선정대표자에 대한 통지로 전체 대표자에 대한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제5조(대표자 등의 서명요청 등) ① 대표자 및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서명요청권을 위임 받은 청구권자(이하 “수임자”라 한다)는 청구인명부에 서명요청시 조례안과 본인의 대표자 증명서나 수임자 증명서를 제시하고 청구취지와 주요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② 청구인명부에 서명하려는 사람은 청구권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성명과 주소, 생년월일을 적고 본인의 성명을 누구나 알아볼 수 있게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③ 대표자 및 수임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청구인명부 및 서명 등 청구인명부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④ 대표자는 청구인명부를 읍·면 별로 구분하여 권별로 묶고 각 권에 별지 제4호 서식의 표지를 부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⑤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청구인명부와 대표자 증명서, 수임자 증명서를 파기하거나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대표자 전원의 동의로 주민조례청구를 포기한 경우

2. 제11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철회하는 경우

⑥ 제1항에 따른 청구인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르고,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르며,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① 의장이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공표 및 열람하게 하는 청구인명부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조례명, 청구취지 및 이유

3. 연서주민수

4.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 및 장소

5. 이의신청 기간 및 방법

② 의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를 공표한 날부터 10일간 정선군청과 읍·면별로 공개된 장소에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갖추어 두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공표 방법) 법 제5조제3항, 제6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표는 군보, 군 게시판, 군 홈페이지, 의회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거나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8조(이의신청)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제6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 내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보정기간) ①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보정이 필요한 경우 의장은 대표자에게 청구인명부를 보정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대표자증명서 등 보정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보정기간은 대표자가 제1항에 따른 보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③ 대표자가 동의하는 경우 의장은 구두·전화 등 그 밖의 상당한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면서 보정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할 수 있다.

제10조(수리·각하 결정 및 통지)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주민조례청구에 대한 수리·각하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

2.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제기된 모든 이의신청에 대하여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결정이 끝난 날(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하려면 미리 대표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의견 준비기간 14일 이상)를 주어야 한다.

③ 의장은 제출된 청구인명부가 제3조제1항에 따른 서명 수에 현저하게 미달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에 따른 서명 유·무효 심사 및 이의신청과 제2항에 따른 의견제출 절차를 생략하고 각하할 수 있다.

제11조(대표자 변경 등) ① 대표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제출 전까지 의장에게 서면으로 대표자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대표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의 수리·각하 결정 전까지 의장에게 서면으로 주민조례청구의 철회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표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제4조제4항에 따른 선정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선정대표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는 각각 별지 제9호 및 제10호서식에 따른다.

제12조(주민조례 입안지원 등) ① 의장은 주민에 대하여 조례안의 입안에 관한 조언·교육 등 주민조례안 청구의 준비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주민은 준비된 조례안에 대하여 의장에게 법 제4조 각 호에 따른 청구 제외 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의견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사무협조)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해 군수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군수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청구권자 확인 사무
2. 법 제11조에 따른 청구인명부 서명의 무효 결정을 위한 검토 사무
3. 제6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열람 관련 사무
4. 제2조제1항 및 제12조에 따른 교육·홍보·지원 등 사무
5. 제2조제3항에 따른 주민조례청구 등록 및 공개 사무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조례의 제정과 개정·폐지 청구 절차가 진행 중인 주민조례청구에도 적용한다.

제3조(특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제10조제1항에 따른 수리·각하 결정기한이 지난 청구에 대해서는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수리·각하 여부를 결정하고 대표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 정선군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 [별지 제3호서식]

주민조례청구 대표자증명서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거소·체류지)	(전화번호 :)		
청구조례명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 청구		
서명요청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위 사람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구인의 대표자로서 위와 같이 18세 이상의 주민에게 서명할 것을 요청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정선군의회 의장 직인			

■ 정선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주민조례청구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청구인의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청구조례명	조례 []제정 []개정 []폐지 청구
-------	-------------------------

주요내용	☐
	☐
	☐

청구이유	
------	--

전자서명에 필요한 정보시스템 이용 신청 여부 ※ 이용신청을 하여야 전자서명이 가능합니다. ※ 이용신청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라 이 청구서 및 조례안, 대표자증명서(대표자 성명 포함, 상세주소를 제외한 주소)는 정보시스템에 공개됩니다.	☐ 이용신청 ☐ 이용신청 안함
정보시스템 대표자 개인정보 공개 범위 선택	▶ 대표자 전화번호 ☐ 공개 ☐ 비공개 ▶ 대표자 상세주소 ☐ 공개 ☐ 비공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와 같이 주민조례를 청구하며, 대표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합니다.

※ 대표자가 복수인 경우 공동대표자용 서식을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위 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정선군의회 의장 귀하

첨부서류	위 청구조례안 및 청구권자 확인서류(주민등록증 등)	수수료 없음
------	------------------------------	-----------

유의사항

• 주요내용 및 이유란이 부족하면 요지만 적고 그 내용은 별지로 작성합니다.

■ 정선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별지 제4호서식]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청구인명부의 표지)

()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

청구

청구인명부

청 구 사 유 :

서 명 기 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읍·면(총○○권 중 제○권)

서명 주민 수 : 명

위 주민조례청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청구인명부를 제출(주민e직접 플랫폼의 전자서명부 활용요청 포함)합니다.

청구인의 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대표자의 수임자

(서명 또는 날인)

작성방법

- "괄호()" 안에는 청구하는 조례의 명칭을 작성합니다.
- "청구사유"란에는 청구의 취지와 이유를 요약하여 작성합니다.
- 청구인명부는 읍·면별로 별도로 철합니다.
- 서명을 요청한 수임자가 여러 명인 경우 각 수임자를 모두 작성합니다.

■ 정선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서식]

공동대표자용 []청구·[]철회·[]선정대표자 지정 서식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청구조례명	조례 []제정 []개정 []폐지 청구		
주요내용	☐ ☐ ☐		

청구인의 대표자

번호	성명	생년월일	주소 (거소·체류지)	전화번호	서명 또는 날인	비고
						선정 대표
						선정 대표
						선정 대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와 같이 주민조례를 []청구, []철회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군의회의장

귀하

작성방법

1. "번호"란에는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작성합니다.
3. "주소"란에는 상세주소(동번호, 호수 또는 층수)까지 작성합니다.
4. "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성명을 자필로 적거나 손도장 또는 도장을 찍습니다.

■ 정선군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 [별지 제5호서식]

청구인명부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청구조례명	조례 []제정 []개정 []폐지 청구		
주요내용	☐ ☐ ☐		
서명을 요청한 사람	[]대표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수임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위 주민조례청구에 동의하여 다음과 같이 청구인명부에 서명합니다.

※ 대표자 및 수임자는 서명요청시 조례안 및 대표자수임자증명서를 제시하고 청구취지와 주요내용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번호	성명	생년월일	주소 (거소·체류지)	서명 또는 날인	서명일	비고

작성방법

1. "번호"란에는 서명 순서에 따라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적습니다.
3. "주소"란에는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 적고, 상세주소(동번호, 호수 또는 층수)가 있는 경우에는 상세주소를 적습니다.
4. "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본인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자필로 성명을 적거나 손도장 또는 도장을 찍습니다.
5. 서명자가 서명을 철회한 경우에는 붉은 선으로 두 줄을 그어 지우고, "비고"란에 철회한 날짜를 적습니다.

■ 정선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별지 제6호서식]

주민조례청구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	------	------

청구조례명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 청구
-------	--------------------------

대 표 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거소·체류지) (전화번호 :)	

수임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거소·체류지)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거소·체류지)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을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정선군의회 의장 귀하

유의사항

청구조례명란에는 조례의 명칭을 적습니다.

■ 정선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별지 제8호서식]

이의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거소·체류지) (전화번호 :)			
대상	()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의 청구인명부			
신청 취지				
신청 사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정선군의회 의장 귀하



신청 취지 및 신청 사유란이 부족하면 요지만 적고, 그 내용은 별지로 작성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 정선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별지 제7호서식]

주민조례청구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청구명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 청구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거소·체류지)	(전화번호 :)		
수임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거소·체류지)	(전화번호 :)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거소·체류지)	(전화번호 :)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대표자가 서명요청권을 위임한 사실을 신고하였으므로 수임자는 서명요청권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정선군의회 의장 직인				

청구조례명란에는 조례의 명칭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 정선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별지 제10호서식]

주민조례청구 철회 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신청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거소·체류지) (전화번호 :)				
청구조례명		조례 []제정·[]개정·[]폐지 청구			
주민조례청구서 제출일자		년 월 일			

위 주민조례청구를 철회하고자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표자가 복수인 경우 공동대표자용 서식을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년 월 일
		(서명 또는 날인)
정선군의회의장 귀하		

첨부서류	대표자증명서(수임자가 있는 경우 수임자증명서 포함)
유의사항	

청구조례명란에는 철회하려는 청구조례의 명칭을 작성합니다.

■ 정선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별지 제9호서식]

주민조례청구 대표자 변경 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청구조례명		조례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			
변경 전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거소 • 체류지) (전화번호 :)				
변경 후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거소 • 체류지) (전화번호 :)				
변경사유					

위와 같이 청구인 대표자의 변경을 신고하오니 처리 바랍니다.

년 월 일

변경 전 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변경 후 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정선군의회의장 귀하

유의사항

청구조례명란에는 철회하려는 청구조례의 명칭을 작성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관 계 법 령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법」 제19조에 따른 주민의 조례 제정과 개정·폐지 청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고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자) 18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청구권자"라 한다)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이하 "지방의회"라 한다)에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할 수 있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永住)할 수 있는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지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구권자가 지방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청구권자가 전자적 방식을 통하여 주민조례청구를 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구권자의 주민조례청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조례청구의 요건, 참여·서명 방법 및 절차 등을 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6.>

제4조(주민조례청구 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주민조례청구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2.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부담금을 부과·징수 또는 감면하는 사항
3.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4.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

제5조(주민조례청구 요건) ① 청구권자가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 이내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청구권자 수 이상이 연대서명하여야 한다.

1. 특별시 및 인구 800만 이상의 광역시·도: 청구권자 총수의 200분의 1
2. 인구 800만 미만의 광역시·도,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및 인구 100만 이상의 시: 청구권자 총수의 150분의 1
3. 인구 50만 이상 100만 미만의 시·군 및 자치구: 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
4. 인구 10만 이상 50만 미만의 시·군 및 자치구: 청구권자 총수의 70분의 1
5. 인구 5만 이상 10만 미만의 시·군 및 자치구: 청구권자 총수의 50분의 1

6. 인구 5만 미만의 시·군 및 자치구: 청구권자 총수의 20분의 1

② 청구권자 총수는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주민등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에 따라 산정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1월 10일까지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6조(대표자 증명서 발급 등) ① 청구권자가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한다)를 선정하여야 하며, 선정된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대표자 증명서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표자는 그 발급을 신청할 때 제7조제4항에 따른 전자서명의 요청에 필요한 제3조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의 이용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1. 주민조례청구의 취지·이유 등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

2. 조례의 제정안·개정안·폐지안(이하 "주민청구조례안"이라 한다)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대표자가 청구권자인지를 확인하여 대표자 증명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정보시스템의 이용 신청을 받은 지방의회의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함께 공표하고, 정보시스템에 제7조제3항 각 호의 서류를 게시하여야 한다.

1.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

2. 전자서명 방법 및 제9조제3항에 따른 전자서명 취소 방법

제7조(서명요청 등) ① 대표자(제2항에 따라 서명요청권을 위임한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수임자를 포함한다)는 청구권자에게 청구인명부에 서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대표자는 청구권자에게 제1항에 따른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경우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 연월일을 해당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의 의장은 즉시 위임신고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대표자 또는 제2항에 따른 수임자(이하 "수임자"라 한다)는 제1항에 따라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명부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청구서나 그 사본

2. 주민청구조례안 또는 그 사본

3. 제6조제2항에 따른 대표자 증명서(수임자의 경우 이 조 제2항 후단에 따른 위임신고증을 포함한다)나 그 사본

④ 대표자는 청구권자에게 제1항에 따른 서명을 갈음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생성된 청구인 서명부에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이하 "전자서명"이라 한다)을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 대표자 또는 수임자는 제6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청구권자에게 알릴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서명요청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8조(서명요청 기간 등) ① 대표자 또는 수임자는 제6조제2항에 따른 공표가 있는 날부터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제7조제1항에 따른 서명과 전자서명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제1항에 따른 서명과 전자서명의 요청 기간을 계산할 때 「공직선거법」 제33조에 따른 선거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대표자 또는 수임자는 「공직선거법」 제33조에 따른 선거기간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서명과 전자서명을 요청할 수 없다.

③ 대표자 또는 수임자가 아닌 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서명과 전자서명을 요청할 수 없다.

제9조(청구인명부의 작성 등) ① 청구인명부에 서명하려는 청구권자는 청구인명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다만, 청구권자가 전자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생성된 청구인명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것으로 본다.

1. 성명
2. 생년월일
3. 주소 또는 체류지
4. 서명 연월일

② 서명을 한 청구권자가 그 서명을 취소하려면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라 대표자가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청구인명부를 제출하기 전에 대표자에게 서명 취소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대표자는 즉시 청구인명부에서 그 서명을 삭제하여야 한다.

③ 전자서명을 한 청구권자가 그 전자서명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대표자가 해당 지방의회에 청구인명부 활용을 요청하기 전에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직접 취소하여야 한다.

④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청구인명부는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읍·면·동별로 작성하고, 시·도의 경우에는 시·군·자치구별로 읍·면·동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구인명부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0조(청구인명부의 제출 등) ① 대표자는 청구인명부에 서명(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청구권자의 수가 제5조제1항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청구권자 수 이상이 되면 제8조제1항에 따른 서명요청 기간이 지난 날부터 시·도의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5일 이내에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청구인명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서명의 경우에는 대표자가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정보시스템에 생성된 청구인명부를 직접 활용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청구인명부를 제출받거나 청구인명부의 활용을 요청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청구인명부의 내용을 공표하여야 하며, 공표한 날부터 10일

간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구인명부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1조(이의신청 등) ① 지방의회의 의장은 청구인명부의 서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서명을 무효로 결정하고 청구인명부를 수정한 후 그 사실을 즉시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청구권자가 아닌 사람의 서명
2. 누구의 서명인지 확인하기 어려운 서명
3. 제7조제1항에 따른 서명요청권이 없는 사람이 받은 서명
4. 한 사람이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2개 이상의 유효한 서명을 한 경우 그 중 하나의 서명을 제외한 나머지 서명
5. 제8조제1항에 따른 서명요청 기간 외의 기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서명요청 제한 기간에 받은 서명
6. 제9조제2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서명 취소를 요청한 서명
7. 강요·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서명

②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에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심사·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청구인명부를 수정하고, 그 사실을 이의신청을 한 사람과 대표자에게 알려야 하며,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뜻을 즉시 이의신청을 한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

④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결정으로 청구인명부에 서명한 청구권자의 수가 제5조제1항에 따른 청구요건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대표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 내에 보정하게 할 수 있다.

1. 시·도: 15일 이상
2. 시·군 및 자치구: 10일 이상

⑤ 제4항에 따라 보정된 청구인명부의 제출, 공표 및 이의신청 등에 관하여는 제10조 및 이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0조제1항 본문 중 "제8조제1항에 따른 서명요청 기간"은 "제11조제4항에 따른 보정 기간"으로 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2조(청구의 수리 및 각하) ① 지방의회의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4조, 제5조 및 제10조제1항(제11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하고,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에는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리 또는 각하 사실을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제11조제2항(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같다)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2. 제11조제2항에 따라 제기된 모든 이의신청에 대하여 같은 조 제3항(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결정이 끝난 경우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하거나 각하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에 대한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모든 이의신청에 대하여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결정이 끝난 날(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제기된 모든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정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

③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하려면 대표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3. 8. 16.>

④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자치법」 제7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조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의회의 의장 명의로 주민청구조례안을 발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6.>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의회의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 8. 16.> [시행일: 2024. 2. 17.]

제13조(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 절차) ① 지방의회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주민청구조례안이 수리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주민청구조례안을 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지방의회는 심사 안건으로 부쳐진 주민청구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대표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그 청구의 취지(대표자와의 질의·답변을 포함한다)를 들을 수 있다.

③ 「지방자치법」 제79조 단서에도 불구하고 주민청구조례안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주민청구조례안을 수리한 당시의 지방의회의원의 임기가 끝나더라도 다음 지방의회의원의 임기까지는 의결되지 못한 것 때문에 폐기되지 아니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의회의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사무 협조)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1조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서명 확인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정선군의회 공고 제2024-2호

정선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입법예고

「정선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정선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1월 4일

정선군의회회의장

1. 제정이유

-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시행 2023.9.22.)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요청으로 지방의회가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인사청문회의 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안 제1조)
- 인사청문 대상자 등에 관한 사항 (안 제2조)
-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제13조)
- 인사청문의 공개 및 대상자 등의 보호에 관한 사항 (안 제14조~제16조)
- 위원 제척 및 회피에 관한 사항 (안 제17조)
- 주의의무 및 준용규정 등 (안 제18조~제19조)

3. 예고기간 : 2024. 1. 4. ~ 1. 9.(초일불산입 / 5일간)

4. 조 례 안 : 붙임 참조

5. 의견제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9일까지 정선군의회회의장(의회사무과)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우)26131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0,
정선군의회

○ 전 화: 033-560-2507

○ 팩 스: 033-563-0320

○ 이 메 일: acesd07@korea.kr

○ 홈페이지

- 정선군의회 <https://council.jeongseon.go.kr>

- 정선군 <http://www.jeongseon.go.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정선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연 락 처: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정선군의회 조례 제 호

정선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7조2에 따라 정선군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운영과 인사청문회의 절차·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사청문 대상자) 인사청문 대상자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정선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인사청문이 요청된 다음 각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의 사장과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의 이사장
2.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의 기관장

제3조(인사청문특별위원회) ① 인사청문 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하기 위해 의회에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인사청문요청안이 의회에 제출된 때에 구성되는 것으로 본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6인 이내로 구성한다.

④ 위원은 정선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⑤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간사 1명을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⑥ 위원회는 인사청문 경과가 본회의에 보고될 때까지 존속한다. 다만, 제11조 단서에 따른 경우에는 의장에게 보고될 때까지 존속한다.

제4조(인사청문회) ① 인사청문은 인사청문 대상자를 출석하게 하여 질의하고 답변과 의견을 듣는 방식으로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증인·감정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진술을 듣는 등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제5조(인사청문 요청 시 첨부서류) 군수는 의회에 인사청문 요청 시 별표1의 증명서류를 첨부한 요청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인사청문 요청의 회부 등) ① 의장은 군수로부터 인사청문 요청안이 의회에 제출된 때에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위원회에 회부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등으로 본회의에 보고

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생략하고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② 의회는 인사청문 요청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③ 군수는 의회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한 경우 제2항에 따른 기간의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인사청문을 실시해 줄 것을 의회에 요청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의회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으면 군수는 인사청문 대상자를 임명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질의 등) ① 위원회는 인사청문 대상자로부터 선서를 받은 후 10분 이내의 범위에서 모두(冒頭)발언을 청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사청문 대상자의 선서는 별표2와 같다.

③ 위원 1인당 질의시간은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④ 위원회에서의 질의는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일괄질의 등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제8조(증인 등의 출석요구) 위원회가 증인, 감정인, 참고인의 출석요구를 한 때에는 출석요구서가 늦어도 출석요구일 3일 전에 의장을 거쳐 송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회의 활동기간 등) ① 위원회는 인사청문 요청안이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되, 인사청문회의의 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사청문 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그 기간 이내에 마치지 못하여 제6조제3항에 따라 기간이 정해진 때에는 그 연장된 기간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② 위원회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치지 않은 경우 의장은 이를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제10조(인사청문 경과보고서) ① 위원회는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3일 이내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사청문 경과보고서에는 인사청문 경과를 기재하고 관련된 중요 증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장의 보고)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인사청문 경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다만, 폐회, 휴회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인사청문 경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은 이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인사청문 경과가 보고되면 의장은 지체 없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2조(자료제출 요구) ① 위원회는 의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인사청문 대상자의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의장을 거쳐 군수 또는 인사청문 대상기

관에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검증) 위원회는 인사청문 대상자의 심사 및 인사청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의결로 검증을 행할 수 있다.

제14조(인사청문회의 공개) 인사청문회는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군사·외교 등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기업 및 개인의 적법한 금융 또는 상거래 등에 관한 정보가 누설될 우려가 있는 경우
4. 계속(繫屬)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누설될 우려가 명백한 경우
5. 그 밖의 다른 법령에 의해 비밀이 유지되어야 하는 경우로서 위원장이 비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5조(인사청문 대상자등의 보호) 위원회에 출석한 인사청문 대상자, 증인, 참고인 등이 답변을 하거나 증언 등을 할 때 특별한 이유로 인사청문회의 비공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인사청문회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공개 이유는 비공개 회의에서 소명하여야 한다.

제16조(답변 등의 거부) 인사청문 대상자는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답변 또는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거부 이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제17조(제척과 회피) ① 위원은 인사청문 대상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인사청문 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위원의 인사청문회 참여를 배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위원은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해당 인사청문 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회피할 수 있다.

제18조(주의의무) ① 위원은 허위사실임을 알고 있음에도 진실인 것을 전제로 발언하거나 위협적 또는 모욕적인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

② 위원 및 사무보조자는 인사청문을 통해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9조(준용) 위원회의 구성·운영과 인사청문회의 절차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정선군의회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정선군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정선군의회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인사청문특별위원회 : 정선군수가 요청한 인사청문 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 실시

[별표1]

인사청문 요청 첨부서류 (제5조 관련)

1. 직업·학력·경력에 관한 사항

가. 이력서

나.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다. 경력증명서

라. 자격증 사본(해당사항 없을 경우 미제출)

마.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바. 개인정보제공동의서

2. 병역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표 초본

3. 「공직자윤리법」 제4조에 따른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사항

4. 최근 5년간의 국세납부내역증명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및 (국세)납세 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5.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의 범죄경력(실효된 형을 포함한다)에 관한 증명서류

6. 그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인사청문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위 중 조례로 정하는 직위의 후보자에 대하여 지방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다.

1. 제123조제2항에 따라 정무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부지사
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시장
3.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의 사장과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의 이사장
4.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전단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의 기관장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인사청문 요청이 있는 경우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후 그 경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인사청문회의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공직자윤리법」

제4조(등록대상재산) ① 등록의무자가 등록할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재산(소유 명의와 관계없이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과 외국에 있는 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1. 본인
2.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본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 다만, 혼인한 직계비속인 여성과 외증조부모, 외조부모, 외손자녀 및 외증손자녀는 제외한다.

② 등록의무자가 등록할 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지상권 및 전세권
2. 광업권·어업권·양식업권, 그 밖에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
3. 다음 각 목의 동산·증권·채권·채무 및 지식재산권(知識財産權)
 - 가.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원 이상의 현금(수표를 포함한다)
 - 나.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원 이상의 예금
 - 다.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원 이상의 주식·국채·공채·회사채 등 증권
 - 라.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원 이상의 채권
 - 마.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원 이상의 채무
 - 바. 소유자별 합계액 500만원 이상의 금 및 백금(금제품 및 백금제품을 포함한다)
 - 사. 품목당 500만원 이상의 보석류

아. 품목당 500만원 이상의 골동품 및 예술품

자. 권당 500만원 이상의 회원권

차. 소유자별 연간 1천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지식재산권

카.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

4. 합명회사·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출자지분

5. 주식매수선택권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할 재산의 종류별 가액(價額)의 산정방법 또는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토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또는 실거래가격

2. 주택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공시가격 또는 실거래가격

3. 상가·빌딩·오피스텔, 그 밖의 부동산은 대지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로 산정한 가액과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고시하는 공정가액 중 최고가액(취득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함께 쓴다)으로 산정한 가액의 합계액 또는 실거래가격

4.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는 실거래가격이나 전문가 등의 평가액 그리고 종류·수량·내용 등 명세

5. 현금·예금·채권 및 채무는 해당 금액

6. 국채·공채·회사채 등 유가증권은 액면가

7. 주식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에 상장된 주권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6조에 따라 장외거래되는 주식 중 증권시장과 유사한 방법으로 거래되는 주식은 재산등록 기준일의 최종거래가격(거래가 재산등록 기준일 전에 마감된 경우에는 마감일의 최종거래가격.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6조에 따라 장외거래되는 주식 중 증권시장과 유사한 방법으로 거래되는 주식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가격을 말한다), 그 외의 주식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 또는 실거래가격

8. 합명회사·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출자지분은 출자가액과 지분비율 및 최근 사업연도의 회사 연간매출액

9. 금 및 백금(금제품 및 백금제품을 포함한다)은 실거래가격이나 신고일 현재의 시장가격 그리고 종류·함량과 중량

10. 보석류는 실거래가격이나 전문가 등의 평가액 그리고 종류·크기·색상 등 명세

11. 골동품 및 예술품은 실거래가격이나 작가·크기를 고려한 전문가 등의 평가액 그리고

종류·크기·작가 및 제작연대 등 작품의 명세

12. 회원권은 취득가액. 다만, 골프회원권은 「소득세법」에 따른 기준시가 또는 실거래가액

13.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는 실거래가액이나 감가상각 등을 고려한 전문가 등의 평가액 그리고 종류·제작연도·제작회사·등록번호 등 명세

14. 주식매수선택권은 받을 주식의 종류 및 수량, 행사가격·행사기간 등 행사조건, 받을 주식의 현재시가 등 명세

④ 제3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등록할 재산의 가액 산정방법과 표시방법, 그 밖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재산에 대하여 소유자별로 재산의 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을 기재하거나 소명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다만, 제10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개대상자는 부동산, 제3항제7호에 따른 그 외의 주식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에 대하여, 제3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공직자 중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제4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자별로 재산의 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등록대상재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다른 등록대상재산과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1.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 이 경우 그 법인에서의 등록의무자의 직위를 밝혀야 한다.

2. 「정치자금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의 예금

⑦ 등록의무자가 제2항에 따른 재산 중 주식을 등록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식을 발행한 자에게 자산총액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을 발행한 자는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형사소송법」

제148조(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 거부) 누구든지 자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형사소추(刑事訴追)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1.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

2. 법정대리인, 후견감독인

제149조(업무상비밀과 증언거부)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대서업자,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약종상, 조산사, 간호사, 종교의 직에 있는 자 또는 이러한 직에 있던 자가 그 업무상 위탁을 받은 관계로 알게 된 사실로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은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단,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 「정선군의회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특별위원회 설치) 의회는 다음 각 호의 소관사항의 효율적 심사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조례의 제정 및 개정, 폐지에 대한 심사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그 결산, 출연기관 등 심사
3.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그 변경계획 등 심사
4. 민간위탁심사특별위원회: 정선군수의 권한을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는 사무에 대한 심사
5. 감사특별위원회: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감사 또는 조사
6. 윤리특별위원회: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 심사
7. 그 밖에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에 따른 특별위원회

정선군의회 공고 제2024-5호

정선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정선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정선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1월 4일

정선군의회회의장

1. 개정이유

- 「정선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추진하고 있는 정선군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 사업을 추가하고, 사업 대상을 구체화하여 직원 후생복지 추진을 원활히 하고 직원의 소속감과 자긍심 고취 및 화합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국내·외 연수지원 대상 구체화 (안 제7조제2호)
- 예방접종 지원 (안 제7조제4호)
- 생일 및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자녀 격려 선물 제공 (안 제7조제9호)
- 역량강화를 위한 문화·스포츠시설 이용 지원 (안 제7조제10호)
- 난임, 임신, 출산 등 공무원에 대한 용품지원 (안 제7조제11호)
- 소속 공무원 또는 소속 공무원의 배우자나 부모, 자녀 등 사망한 경우 장례 지원 (안 제7조제12호)
- 신규 또는 장기재직 공무원, 퇴직공무원 등에 대한 격려금품 지원 (안 제7조제13호)

3. 예고기간 : 2024. 1. 4. ~ 1. 9.(초일불산입 / 5일간)

4. 조 례 안 : 붙임 참조

5. 의견제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9일까지 정선군의회회의장

(의회사무과)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우)26131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0, 정선군의회
- 전 화: 033-560-4508
- 팩 스: 033-562-5203
- 이 메 일: hyncs798@korea.kr
- 홈페이지
 - 정선군의회 <https://council.jeongseon.go.kr/>
 - 정선군 <http://www.jeongseon.go.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정선군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정선군의회 조례 제 호

정선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선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운영”을 “운영과 각종 예방접종 지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호를 제1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우수·효행·2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과 그 가족(배우자 등 가족 1명 포함)에 대한 국내·외 연수 지원
4. 소속공무원의 건강증진 및 체력향상을 위한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과 각종 예방접종 지원
9. 소속공무원의 생일 및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자녀 격려 선물 제공
10. 소속공무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문화·스포츠시설 이용 지원
11. 난임, 임신, 출산 공무원 및 자녀를 입양한 공무원에 대한 용품지원(남성 공무원의 경우 배우자가 임신, 출산한 경우를 포함한다)
12. 소속 공무원 또는 소속 공무원의 배우자나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또는 자녀가 사망한 경우에 대한 장례 지원
13. 신규 또는 장기재직(10년, 20년, 30년 이상) 공무원과 10년 이상 재직 퇴직공무원 및 정년·명예 퇴직공무원의 격려금품 지급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직원 후 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하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 행할 수 있다.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u>우수·효행·장기근속 공무 원과 그 가족에 대한 국내외 시찰 지원</u>	2. <u>우수·효행·20년 이상 장기 근속 공무원과 그 가족(배우 자 등 가족 1명 포함)에 대한 국내·외 연수 지원</u>
3. (생략)	3. (현행과 같음)
4. 소속공무원의 건강증진 및 체력향상을 위한 건강관리 프 로그램 <u>운영</u>	4. ----- ----- ----- <u>운영과 각종 예방접종 지원</u>
5. ~ 8. (생략)	5. ~ 8. (현행과 같음)
<u><신설></u>	9. <u>소속공무원의 생일 및 대학 수학능력시험 응시자녀 격려 선물 제공</u>
<u><신설></u>	10. <u>소속공무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문화·스포츠시설 이용 지원</u>
<u><신설></u>	11. <u>난임, 임신, 출산 공무원 및 자녀를 입양한 공무원에 대한</u>

<u><신 설></u>	<u>용품 지원(남성 공무원의 경</u> <u>우 배우자가 임신, 출산한 경</u> <u>우를 포함한다)</u>
<u><신 설></u>	<u>12. 소속 공무원 또는 소속 공무</u> <u>원의 배우자나 부모(배우자의</u> <u>부모를 포함한다) 또는 자녀</u> <u>가 사망한 경우에 대한 장례</u> <u>지원</u>
	<u>13. 신규·장기재직(10년, 20년,</u> <u>30년 이상) 공무원과 10년 이</u> <u>상 재직 퇴직공무원 및 정년·</u> <u>명예 퇴직공무원의 격려금품</u> <u>지급</u>
<u>9. (생 략)</u>	<u>14. (현행 제9호와 같음)</u>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

가.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위치 및 구역의 조정

나. 조례·규칙의 제정·개정·폐지 및 그 운영·관리

다. 산하(傘下) 행정기관의 조직관리

라.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감독

마. 소속 공무원의 인사·후생복지 및 교육

바.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

사. 예산의 편성·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

자. 공유재산(公有財産) 관리

차. 주민등록 관리

카.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

□ 지방공무원법

제77조(능률 증진을 위한 사항)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근무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휴양·안전·후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상호 간에 협의하여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장애인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9조의2에 따른 근로지원인 서비스의 제공(중증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것으로 한정한다) 또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작업 보조 공학기기 또는 장비 등의 제공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고, 그 지원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지원의 세부내용, 방법, 절차 등과 제3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정선군의회 공고 제2024-6호

정선군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정선군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정선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1월 5일

정선군의회회의장

1.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 제46조에 근거하여, 정선군의회 의원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능력을 배양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국내 교육연수를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의장 및 의원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의원 교육연수의 기회 제공, 연수내용 등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연간 의원 연수계획 수립 및 그 내용 등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연수 계획의 통지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 예산의 지원 범위, 예산지원 절차, 교육비 반환에 관한 사항 (안 제57)
- 연수보고서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3. 예고기간 : 2024. 1. 5. ~ 1. 10.(초일불산입 / 5일간)

4. 조 례 안 : 붙임 참조

5. 의견제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10일까지 정선군의회회의장(의회사무과)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우)26131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0, 정선군의회
- 전 화: 033-560-4508
- 팩 스: 033-562-5203
- 이 메 일: hyncs798@korea.kr
- 홈페이지
 - 정선군의회 <https://council.jeongseon.go.kr/>
 - 정선군 <http://www.jeongseon.go.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정선군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정선군의회 조례 제 호

정선군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전반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능력을 함양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각종 교육연수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정선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②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의원 교육연수는 국내로 한다.

제3조(책무) ① 정선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의 의정활동 전문성과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연수 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의정활동 수행에 필요한 역량강화, 전문지식 향상을 위한 연수에 적극 참여하고, 의정활동에 반영하도록 연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원칙) ① 의원 교육연수는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과 자질 향상을 위한 것으로 그 기회를 충분하게 제공되어야 한다.

② 의원에게 제공되는 교육연수는 의정활동에 대한 이해와 직무능력 향상, 합리적인 의사결정 능력 함양, 건전한 민주 의식 제고 및 기본 교양교육 등의 내용이 적절히 포함되도록 한다.

제5조(교육연수 기본계획) ① 의장은 의원의 의정활동 전문성과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연수 활동과 그 지원 사항 등을 포함한 연간 의원 교육연수계획을 매년 2월말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교육연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5호는 「공직선거법」 제203조제1항에 따른 동시선거가 있는 해에만 적용한다.

1. 교육연수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교육연수 운영에 관한 사항(교육일정, 방식, 소요경비 등)
3. 의원의 교육연수 수요에 관한 사항
4. 전년도 교육연수 시행 결과 등의 평가
5. 의원당선인에 대한 교육연수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교육연수와 관련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연수에는 전문교육, 국내연수, 비교시찰 등으로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이해와 직무능력 향상, 합리적인 의사결정 능력 배양, 민주 의식 제고, 기본 교양교육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6조(연수 계획의 통지) 의장은 제5조에 따른 교육연수 계획을 세운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각 의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교육연수 지원) ① 의장은 의원이 개별적으로 교육연수를 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의원은 개별적으로 제1항의 비용을 지원받아 교육연수를 받을 경우 연수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원은 제1항의 비용을 지원 받았거나 받으려면 교육연수를 마친 후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현장방문 결과서, 방문사진,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 서류 등)를 종료 후 20일 이내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교육의 경우 교육연수기관의 수료 통보문서를 증명서류로 본다.

④ 제3항의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의원은 지원을 받지 못하며 지원받은 예산은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연수보고서 제출 등) ① 의원은 제7조에 따라 연수(교육은 제외)를 마친 후 의장에게 30일 이내에 연수보고서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연수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열람이 용이하도록 조치하여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정선군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서식]

연수보고서

소 속		성 명	
주 최			
연수일시			
연수장소			
강 사			
(연수내용)			
(소감·의견)		(연수비용)	
위와 같이 연수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정선군의회 의원		(서명 또는 날인)	
정선군의회 의장 귀하			

※ 필요시 서식은 변경 사용 가능, 추가 자료는 별첨하여 제출

관 계 법 령☐ 지방자치법

제46조(지방의회의 의무 등) ① 지방의회는 지방의회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② 지방의회는 소속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정선군의회 공고 제2024-7호

정선군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정선군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정선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1월 5일

정선군의회 의장

1. 제안이유

- 「산후조리원 이용 등 산후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여 산모의 산후회복 및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정의 (안 제1조, 안 제2조)
- 산후조리비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3조, 안 제4조)
 - 산후조리비 지원금 최대 100만원
- 산후조리비 지원신청 및 지원절차에 관한 사항(안 제5조, 안 제6조)
- 지원대상 안내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지원금 환수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지원금 소급적용에 관한 사항(부칙 제2조)
 -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부터 적용

3. 예고기간 : 2024. 1. 5 ~ 1. 10.(초일불산입 / 5일간)

4. 조 례 안 : 붙임 참조

5. 의견제출

본 규칙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10일까지 정선군 의회의장(의회사무과)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우)26131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0
정선군의회

○ 전 화: 033-560-2177

○ 팩 스: 033-562-5203

○ 이 메 일: sbonnie@korea.kr

○ 홈페이지

- 정선군의회 <https://council.jeongseon.go.kr>

- 정선군 <http://www.jeongseon.go.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정선군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연 락 처: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정선군 조례 제 호

정선군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 출산가정의 산후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여 산모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후조리비”란 산모가 출산 후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 및 그 밖에 다른 장소에서 산후조리를 하는 데 사용되는 경비를 말한다.
2. “신청인”이란 출생아의 모 또는 부를 말한다.
3. “대리신청인”이란 제2호의 신청인이 지정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①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출산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 또는 체류지 등록을 두고, 군에 신생아 출생신고를 한 산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산후조리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에 따른 체류자격을 취득한 산모
- ② 신청일 전 신생아가 사망한 경우에는 출생증명서 확인으로 산후조리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범위)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시설 등의 이용에 따른 산후조리비를 산모 1인당 최대 100만원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태아를 출산한 산모에게도 단태아 출산 산모와 동일하게 지원한다.

1. 산후조리원
2.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제공기관
3. 병·의원 및 한의원(의약품, 한약, 건강식품 등)
4. 운동시설(헬스, 요가 등)
5. 기타 군수가 산후조리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인정하는 시설 등

제5조(지원신청 등) ① 신청인은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산후조리비 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신청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 대리신청인이 신청인

의 권한을 위임 받아 대리 신청 할 수 있다.

제6조(지원절차) 군수는 신청인의 지원금 신청서를 검토한 후 지원금 지급이 결정되면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대상의 안내) 군수는 신생아의 출생신고서를 접수할 때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8조(환수조치) 군수는 지원금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2.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았을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산후조리비 지원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제5조 관련

정선군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서						
신청인 (산모)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신청인 (대리인)	성 명		신청인(산모) 과의 관계		정 선 군 거주기간	부 모 출생아
	주 소			전화번호		
신청내역 ※영수증 첨 부	업 종	☐ 산후조리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 의약품·한약·건강식품 ☐ 운동 시설(프로그램 수강) ☐ 기타				
	사 용 처	(상호명) (주소)				
	사용내역					
	신청금액 (실비)	원				
지 급 계좌번호	예금주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참 고	
상기 서비스 제공사항에 대해 산후조리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대리인 : (서명 또는 인)						
정선군수 귀하						
담당자 검토의견		지급가능금액 (원) ※ 천원 단위 절사		담당자 (서명)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에 의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에게 제공 등에 동의하며,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만일, 본인이 위의 사항에 동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환수에 대한 동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그 밖에 잘못 지급된 지원 금액이 있는 경우 지원금 환수 조치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대리인 :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1. 영수증 1부. 2. 사용처 및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1부. 3. 통장사본 1부. 4. 주민등록 등·초본 1부.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하지 않을 경우)				

관 계 법 령

□ 「모자보건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조사·연구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모성과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12., 2021. 12. 21.>

[전문개정 2009. 1. 7.]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5. 23.>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강구 및 지원을 위하여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2. 5. 23.>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200만원의 첫만남이용권(이하 “이용권”이라 한다)을 출생아동에게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1. 12. 14.>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아동이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의 아동양육시설이나 같은 항 제4호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경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2조의 자산형성지원사업에 따라 개설된 출생아동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1. 12. 14.>

⑤ 이용권을 지급받으려는 보호자(아동의 친권자·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호자의 대리인은 출생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용권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1. 12. 14.>

⑥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이용권의 지급 대상·방법·시기 및 지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 12. 14.>

□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가정에 대한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이 원활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가족구성원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지원
2. 소득보장 등 경제생활의 안정
3. 안정된 주거생활
4. 태아검진 및 출산·양육의 지원
5. 직장과 가정의 양립
6. 음란물·유혹가·폭력 등 위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
7. 가정폭력으로부터의 보호
8. 가정친화적 사회분위기의 조성
9. 그 밖에 건강한 가정의 기능을 강화·지원할 수 있는 관련 사항

□ 「민법」

제779조(가족의 범위) ①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②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